

---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

**제 2-1 판**

**2022. 3.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목 차

I. 추진 방향 .....	1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개요 .....	1
2. 요건 및 신청방법 .....	1
II. 기관 운영 .....	4
III.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	5
[참고] .....	11
[붙임] .....	17
[서식] .....	21

## □ 개요

- (목적)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운영)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검사 후 전화상담·처방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
- (역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처방 등), 전화상담, 중증 환자 전원\*
  - \*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보고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 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의원, 병원\*
  - \* 단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외
- (요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전화상담·처방 역할 수행 필요
  -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 병원급 의료기관은 아래의 시설·설비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함

- ① (시설·설비 기준)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을 고려
-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분리
    -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진료예약 또는 진료시간대 분리 등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접촉 방지
  -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 이동형 방사선기 활용 가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 (예)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검체채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안내문 비치</li><li>·마스크,</li><li>손소독제,</li><li>소독티슈(환경 표면 소독용)</li><li>·혈압계, 체온계</li><li>·산소포화도 측정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손소독제, 소독티슈 등</li><li>*환자 간 거리 확보(2m 이상 권장, 최소 1m)</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li><li>·산소발생기</li><li>·손소독제, 소독티슈</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li><li>·방사선촬영기</li><li>·손소독제, 소독티슈</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li><li>·손소독제, 소독티슈</li><li>·폐기물함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음압설비(해파 필터)</li><li>*검체채취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검체채취부스 활용 가능</li></ul>

- ② (운영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수행\*
  - \* 검체채취 또는 채취 및 진단검사를 수행하며, 검체채취시 별도의 채취실 이용
-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수행\*
  -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집중관리군 관리 가능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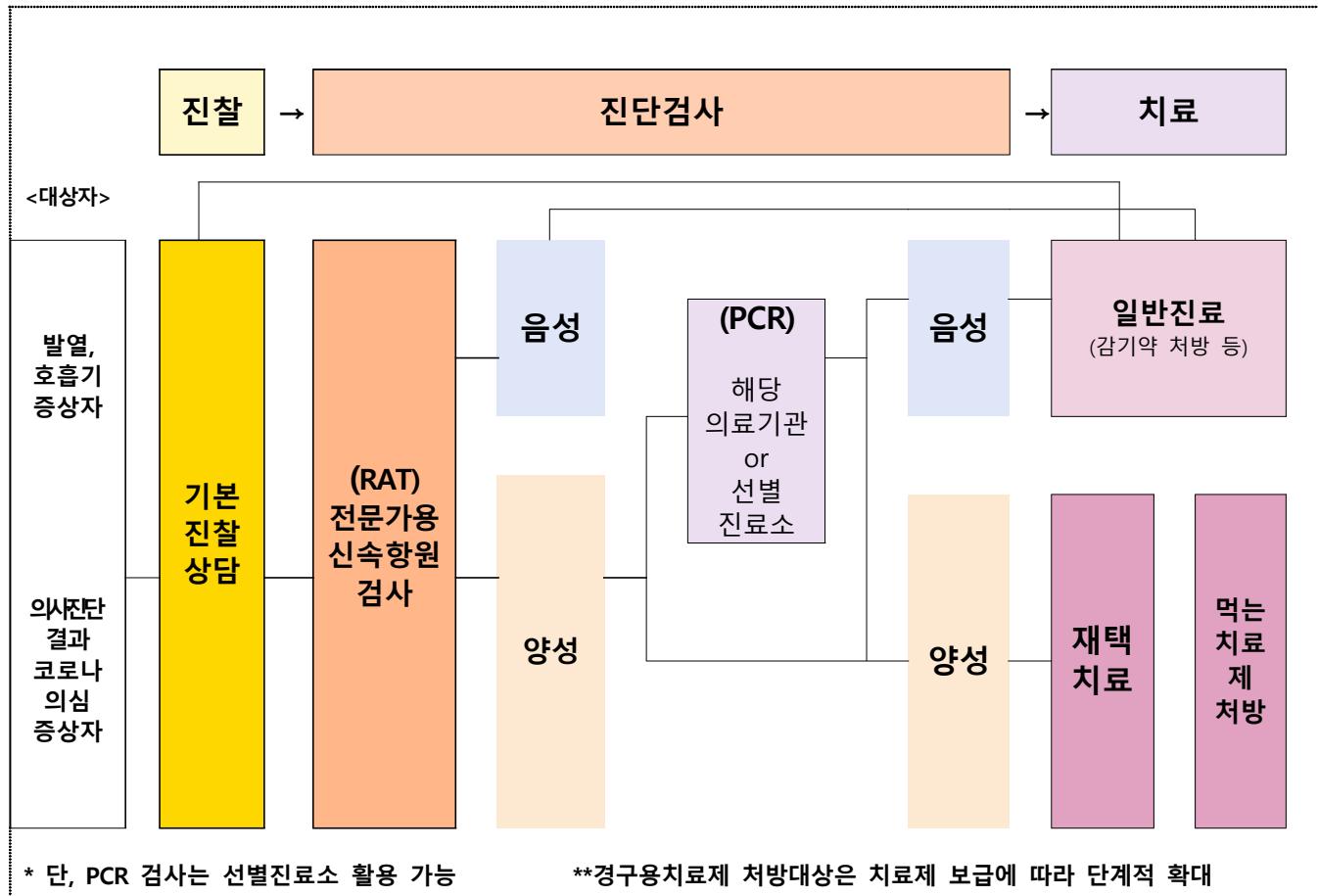
- (신청) RAT 검사(급여)를 위해 희망 의료기관은 심평원으로 신청\*,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 심평원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

- (기본방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 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검사부터 치료”까지 수행

### 【진료 프로세스】



- (역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
  - ▲ 환자 기본진찰·초기진단 ▲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 재택치료((일반) 전화상담·처방, (집중) 건강모니터링 등)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포함, 이하 같음)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 1. 방문 · 접수

-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 (가급적 자차 권장)
  - (의원급) 사전 진료예약,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간 진료시간대 분리 등을 권장
  - (병원급) 코로나 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동선 분리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진료예약 또는 진료시간대 분리 등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접촉 방지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sup>\*</sup>되며, 환기<sup>\*\*</sup>(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예약 등을 통해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 (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 2. 진찰

- (진찰)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찰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 (후속절차) 진료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일반 진료(예시: 감기약 처방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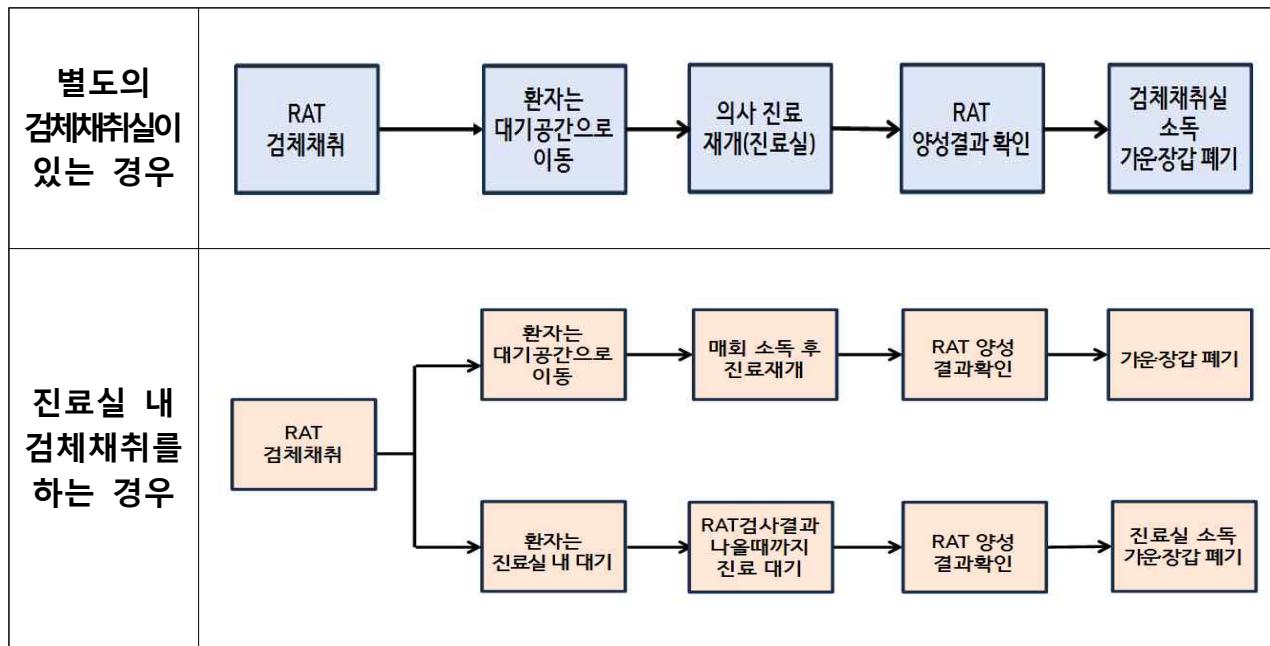
## 3. 진단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 · 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단, 병원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검체채취실 설치 필수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  
(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  
(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



### ○ (후속 절차)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검사 종료

- 일반진료 실시

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인정, 격리 및 치료를 연계

###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 당일 집계 및 확진자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당일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참고1 활용

다. RAT 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 판단 시 PCR 검사 가능

- 자체 PCR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PCR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전문 의료 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대응 요령 >

<b>❶</b>	RAT 양성자에게 확진 사실과 격리 의무 발생 및 재택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지도, <b>안내문 배부</b> (서식1 활용)
	* 격리통지는 보건소가 수행
<b>❷</b>	<b>환자 진료 및 처방</b>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b>❸</b>	<b>추가 PCR 필요 여부 진단</b>
<b>❹</b>	보건소로 신고(카톡, 유선 등 핫라인) 및 <b>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b> 에 입력 신고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b>❺</b>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사, 진료실 의사(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u>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u>

### ○ (후속 절차) PCR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종료

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 확진자 진료 연계

- △자체 환경관리 유지, △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강조, △의료진 의심증상 시 업무 배제 및 진단검사 실시

### [3]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

○ (격리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 및 주의사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됨을 안내 (안내문 배부, 서식1)

- (귀가방법) RAT 또는 PCR을 위한 검체채취 후 귀가시 안내사항
  - 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제)
  - 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 4. 치료 : 처방 및 재택치료

### [1] 일반적인 진료

- (진료 대상) ①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 [2]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 (진료 대상)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진료 내용)
  - ① 일반관리군\* 환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등 실시(붙임1,2 참고)
    - \* (집중관리군) ①60세 이상, ②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및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외 환자
  - ② 집중관리군 환자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처방 실시
    - \* 집중관리군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별도 지정 필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6-1판)」 참조
  - ③ 의약품 처방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등 처방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4-3판)」 참고
  - ④ 대면진료 :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신청·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실시
    - \* 확진자 진료 및 대기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 또는 일반환자/확진환자 진료시간대 분리하여 실시

## 참고1

##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신고체계

### 1. 확진환자 신고

-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 EMR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주소 등 환자의 인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2. 확진환자 사망 신고

-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보고  사망보고 ( 검안보고)

초기화 발생정보검색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한글 및 영문 입력 가능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거주지불명 <input type="checkbox"/> 신원미상
보호자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input type="text"/>	성별	선택▼	연령(만) <input type="text"/> 세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후대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도로명주소찾기 <small>상세주소(참고항목)</small>
직업	선택하세요	상세직업: <input type="text"/>		

감염병명

감염병명	1급 <input type="button" value="▼"/> 신종감염병증후군 <input type="button" value="▼"/>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경과	<input type="text"/>

감염병 발생경보

발병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진단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신고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진검사결과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 진행중 <input type="radio"/>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외래 <input type="radio"/> 입원 <input type="radio"/> 그 밖의 경우
환자분류	<input type="radio"/> 환자 <input type="radio"/> 의사환자 <input type="radio"/> 병원체보유자 <input type="radio"/> 검사 거부자 <input type="radio"/> 그 밖의 경우(환자아님)				
비고 (특이사항)	<input type="text"/>				
사망여부	<input type="radio"/> 생존 <input checked="" type="radio"/> 사망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참고2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9. 11.>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보건소장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정후: [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수두(水痘) [ ]파라티푸스 [ ]A형간염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성홍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파상풍(破傷風) [ ]말라리아 [ ]발진열(發疹熱) [ ]공수병(恐水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라임병 [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증동호흡기증후군(MERS) [ ]신종인플루엔자 [ ]콜레라 [ ]세균성이질 [ ]백일해(百日咳) [ ]풀리오 [ ]폐렴구균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E형간염 [ ]B형간염 [ ]레지오넬라증 [ ]쯔쯔가무시증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일본뇌염 [ ]비브리오패혈증 [ ]렙토스피라증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C형간염 [ ]발진티푸스 [ ]브루셀라증 [ ]수막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웨스트나일열 [ ]치쿤구니야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그 밖의 경우	[ ]입원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제2급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제3급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검사 거부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환자의 소속기관명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80g/m <sup>2</sup> )]

## 신고방법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 참고3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9. 1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보건소장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E형간염	
제3급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 감염증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판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리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가) 직접사인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원인] \* (나)(다)(라)에는 (가)와의 직접적·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

수술의 주요 소견		사망일
해부(또는 검안)의 주요 소견		

###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신고기관장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신고방법

1. 제1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환자 및 제3급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4.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체크표(✓)를 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한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기재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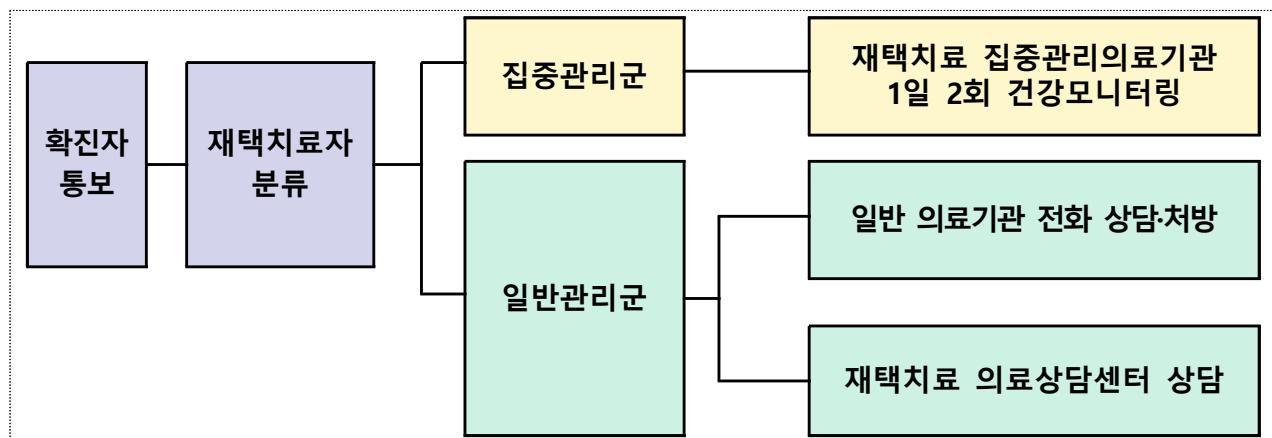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체크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 재택치료 체계

-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통하여 관리



-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시 처방 실시

※ (약 조제·전달)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

- (빠른 유행확산) 델타 대비 2~3배 높은 전파력으로 향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예상
  - \* 우리나라와 유행상황이 유사한 선행국가(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오미크론 출현 이전 정점보다 **12.6배~47.2배** 환자 발생
- (경증환자 위주 발생) 상기도 감염이 주가 되고 폐렴 진행이 적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 다수 발생** 예상
  -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1/3**, 치명률\*\*은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질병청, 2.2.)
  - \* (델타변이) 40대 0.5%, 50대 1.5%, 60대 3.1%, 70대 8.1%, 80대 이상 16.8%  
 (오미크론) 40대 0.1%, 50대 0.0%, 60대 0.3%, 70대 3.6%, 80대 이상 9.3%
  - \*\* 오미크론 치명률 0.15%, 델타 치명률 0.7% 흉역 치명률 0.1~0.2%, 독감 치명률 0.1%

## □ 전화상담 · 처방 주요 내용

-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 (방식) 총 2회\*(확진되어 격리해제까지 기간 중)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화 (의사→환자)

\* ① RAT, PCR 검사한 환자에게 해당 검사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하여 상태 확인  
②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환자가 전화 상담·처방 연락시 최초 전화로 갈음

-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처방(환자→의사)

- (추가)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 단,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2.10일부터 적용)

<전화 상담·처방 수가>

종별	진료비 총액	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의원	24,260	12,130	12,130
병원	23,740	11,870	11,870

\*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

\*\*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 가능

-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2.11부터 가능),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 코드 입력
-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 <유의사항>

-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 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약국(먹는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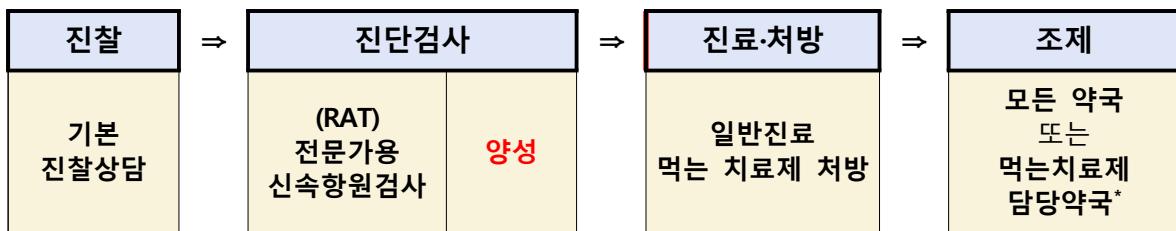
\*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http://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 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

-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lt;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진료 절차 &gt;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진료)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DU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4-3판)」 참고

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처방전에 확진자(RAT 양성)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를 처방시 투약기간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전화 상담 요청, 필요시 대면진료 등 **유의사항 안내 철저**

- 투약 중지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 불임4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전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http://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엑셀파일 업로드)

※ (메인팝업)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바로가기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일반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③ 민간포털(네이버, 카카오맵 등)에서 검색 가능

## 서식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용)

우리 ( 의료기관명 )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 집중관리군에 대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귀하는 ( 월 일 시 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안내

재택치료 대상자는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며, 지자체(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 유형을 분류하고 재택치료시 자세한 행동 요령을 빠른 시일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11.kr/wpv5>) 또는 QR코드(우측상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집중 관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li> <li>·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li> <li>· (필요시) 전화상담 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li> </ul>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이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li> <li>· (야간) 의료상담센터 상담</li> </ul>

## 추가 안내

## 일반관리군 진료안내

격리기간에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상담과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http://www.hira.or.kr))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가기' 팝업창에서 관내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맵, 카카오맵에서도 검색 가능

## 일반관리군 진료안내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관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일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정받은 관리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 처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 가능, ②, ③의 경우 PCR 양성인 경우만 처방 가능)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sup>2</sup> 이상, ▲신경발달장애

##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지자체별 지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진료가 필요한 경우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시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 코로나19 환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지자체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을 안내

### ▣ ○○시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 ○○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 ○○시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 ○○시 재택치료자 24시간(야간) 의료상담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 ○○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 ○○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 서식2

### 개인정보 작성 요청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 코로나 19 확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협조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즉시 확진환자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환자 등록 및 배정, 격리기간 환자 관리 및 격리 물품 전달, 의약품 처방,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 환자 기재사항 -

1. 성명 :
2. 주민번호 :
3. 휴대폰번호 :
4. 거주지 상세주소 :
5. 기저질환 :

## 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예시)

※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추진단 담당자 연락처를 기억하시고,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추진단 담당자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담당 의료진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언제 어떨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만 알면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①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격리해제기간 동안 자택에만 계세요.
  - 생필품 등은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세요.
  - 대면 진료 필요시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환자의 격리시작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1)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2)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 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②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 KF94(또는 동급)마스크를 반드시 쓰세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콜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 ③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① 집중관리군은 건강관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② 일반관리군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④ 이럴 때는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아픈데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
-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 ✓ 발열, 오한, 기침, 목이 따가움, 코막힘, 콧물, 근육통, 두통, 피곤함
- ✓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맡지 못함
- ✓ 메스껍고 토판, 설사

### ⑤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별도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건강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 ❶ 먼저, 숨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고 손가락 산소 측정기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해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바로 측정해 보세요.
  - ☞ 94%보다 낮게 나오면 빨리 별도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여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 ❷ 숨이 차지 않아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 ⑥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일반쓰레기)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①소독 후 분리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 ⑦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성인 및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에 대하여 ‘재택치료’ 하는 성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고, 귀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지합니다.
  - 또한, 재택치료 장소에 모든 외부인(가족, 친구 포함) 방문을 금지합니다.
- 재택치료 환자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 격리기간(7일)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지정된 재택치료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또는 격리중 타인 접촉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가 사후 확인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달 음식 또는 물품을 수령할 경우, 문 앞에 놓도록 하여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안내받은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폐기물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하면 됩니다.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①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면 됩니다.

## [자가 건강확인 준수사항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 사항]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전화, 화상통신 등)을 받게 됩니다.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의 진료지원 앱(URL 포함)을 설치해 주세요.
-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동거인용)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입력\*\*해주세요.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동거인용)자가검사키트)는 요청 시 자자체에서 지급됩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력자료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참고하게 됩니다.
-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 1) 증상 발생 시에는 ①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주세요. ②필요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2)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 (1) ○○병원 000-000-0000
-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혀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②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소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유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합니다.  
웃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 영·유아 및 소아 자가격리(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안)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 영·유아/소아 자가격리(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재택치료자를 돌볼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여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재택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 [건강관리]

- 재택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C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 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수유 및 이유식관리]

-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 가능합니다.
  -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 등급 또는 그 이상), 장갑을 권장합니다.
  -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 [소독 및 환경관리]▶

- 재택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육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
-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아이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하여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 장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 해야 합니다.
-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 ◦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며, ②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 밀봉 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①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귀하의 아이에 대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또는 격리해제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시 진료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하단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집에 있는 체온계로 발열 체크 및 감기 증상이 발현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동거인용)자가검사키트)는 필요시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 $37.5^{\circ}\text{C}$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혓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홈페이지) [www.kdca.go.kr](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

(소독제 회색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탈의,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